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문 (학생 및 학과 공지용)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안내]

☎ 학생담당자 한지유 850-5614 (hnh@daegu.ac.kr)

☎ 기관담당자 최영서 850-5618 (yooung06@daegu.ac.kr)

※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1.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 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 기관에 지원.선발되
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1)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 2024. 07. 15.(월) ~ 2024. 08. 30.(금) 까지

다. 신청방법: 올인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 입사 지원을 완료 후 최종합격 시 학생 포털시스템 접
속 후 실습 참가 신청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국내현장실습(4)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16주 이상 (640시간이상)
국내현장실습(5)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20주 이상 (800시간이상)
국내현장실습(6)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16주 이상 (640시간이상)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20주 이상 (800시간이상)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 국내현장실습(6)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함.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3. 실습기간

-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 나.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 (2024-2학기) 개강일부터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640시간이상)	2024.09.02.(월)	2024.12.22(일)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20주(800시간이상)	2024.09.02.(월)	2025.01.19(일)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유의사항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사일정으로 인해 16주 현장실습만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20주 참여 불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 바람)			

4. 신청자격

- 가. 5개 학기 이상 실습 가능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마.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업(기관)
 - 바.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2024년 최저임금기준 75%)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 사.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 참여제외 기업(기관)
1)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2)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3)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 (용업업체 포함)
4)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 가.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 신청에 대한 실습지도 교수 승인
-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와 '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청

7.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 직장예절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명
- 나.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
- 다.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

8.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 요청 사항

- 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 나. 실습지원비 지급 (직무교육 배정 시간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지급)
 -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75% 이상 지급
 -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50% 이상 지급

9. 기관 지원 사항

- 가. 실습 기관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
- (※ 단, 실습 종료 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혹은 이체 확인증 및 기관(명)으로 된 통장 사본, 각 1부씩 제출 요망)

10. 유의사항

- 가. 8학기 재학생의 경우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16주 현장실습만 신청가능하며,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나. 현장실습 (국내, 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 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처리 됨.
- (※ 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 (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 바람.
-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 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 사.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 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 불가)

11. 실습 기관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12. 평가 및 학점인정

가.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 주간활동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기관성적표,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출근상황부	10	결근 1회당 2점 감점
주간활동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종합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현장실습기관성적표	4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
실습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합계	100	Pass / Fail

나.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 '일 반선택'의 교과구분으로 학점을 부여

13. 실습지원비

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시간	실습기관의 정규근로일수(주 5일) 및 시수 동일하게 운영	주 5일 중 1일 6시간 이상 실습원칙 단, 무급으로 운영시 주 15시간 이내 2개월 이내로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야 함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 이하 (직무 중심)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 50 이하 (교육 중심)
★실습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 (10~25%이하)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 최소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 2024년도 최저 임금 - 2,060,740원	교육시간(25~50%이하)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소 50%이상 지급
보험가입 유무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계약 체결	실습기관 필요에 따라 체결 가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범위 안)	체결 불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무급)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 간에 사전 동의 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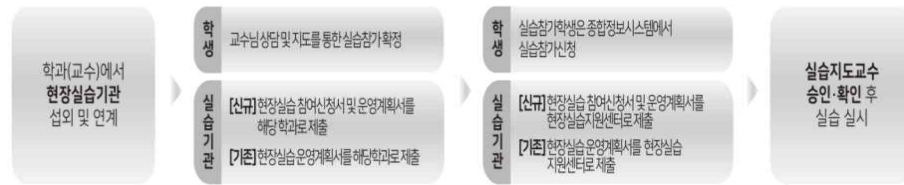
2 현장실습 참가신청 안내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1)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연계
-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 3)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 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4)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①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 참가 확정

②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③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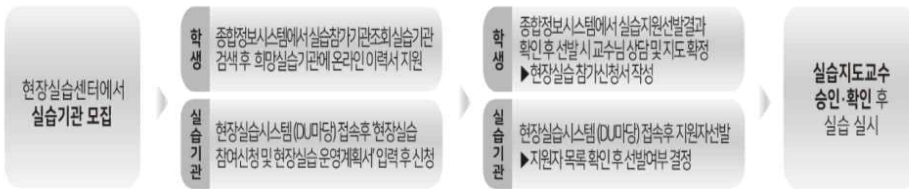
학과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제통상실습(2)	일반선택	계열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제통상실습(3)	일반선택	계열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국제통상실습(4)	일반선택	학기제	12	36주 이상(1440시간 이상)

-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 (학적, 등록/장학 등)에서 수정하여야 함
-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16주 또는 20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
-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할 실 교수님을 '찾기'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
-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 클릭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
- 5)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 6) 실습가능한 기관이 조회되지 않을 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올인케어 역량개발프로그램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서 작성



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회' 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실습가능기관 계획서 '보기' 클릭 시 아래내용 (실습정보) 확인>

* 실습기관이 조회가 안될 시 현장실습지원센터(850-5618, 850-5614) 로 연락 바랍니다.

②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

*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실습지원'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

- 실습기관 '찾기'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

-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 이력서 '접수'로 표기됨
-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선발'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후 '신청서'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
- * 유의사항
 - 실습지원 상태 '접수' 및 '선발'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
 - 실습지원 상태 '탈락' 및 '신청취소'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단,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접수"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
- 선발 확정 후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공통사항 학과(교수) 연계형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①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현장실습신청서관리’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

-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 상태가 ‘접수’로 표시됨

The screenshot shows the '현장실습신청가 조회' (Field Practice Application Inquiry) screen. The status is '접수' (Received). The table below shows the application details:

연도	학기	교과과정	신청(교과)시작일	신청(교과)종료일	과목	학점	연수업체	상태	비고
2019	1	학기제	2019-03-04 일	2019-06-23 일	국내현장실습(4)	12	대구대학교	접수	

- 실습지도교수님이 ‘승인’처리 시 : 상태가 ‘대기’로 표시됨

The screenshot shows the '현장실습신청가 조회' (Field Practice Application Inquiry) screen. The status is '대기' (Waiting). The table below shows the application details:

연도	학기	교과과정	신청(교과)시작일	신청(교과)종료일	과목	학점	연수업체	상태	비고
2019	1	학기제	2019-03-04 일	2019-06-23 일	국내현장실습(4)	12	대구대학교	대기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확인’ 처리 시 : 상태가 ‘통과’로 표시됨

The screenshot shows the '현장실습신청가 조회' (Field Practice Application Inquiry) screen. The status is '통과' (Passed). The table below shows the application details:

연도	학기	교과과정	신청(교과)시작일	신청(교과)종료일	과목	학점	연수업체	상태	비고
2019	1	학기제	2019-03-04 일	2019-06-23 일	국내현장실습(4)	12	대구대학교	통과	

※ 상태가 ‘통과’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

나. 실습일지(주간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작성

① 실습시작 후 ‘주간실습일지’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실습이 종료되는 마지막날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학점 지급 가능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The screenshot shows the '주간실습일지 작성' (Weekly Practice Diary Writing) screen. The status is '작성' (Written). The table below shows the application details:

연도	학기	교과과정	과목명	학점	기관명	교과 시작일	교과 종료일	상태	주간실습일지
2019	1	학기제	국내현장실습(4)	12	대구대학교	2019-03-04 일	2019-06-23 일	통과	작성

② 실습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단, 실습 기관 소개 및 건의 사항 글자 제한 없음)

The screenshot shows the '종합보고서 작성' (Comprehensive Report Writing) screen. The status is '작성' (Written). The table below shows the application details:

연도	학기	교과과정	과목명	학점	기관명	교과 시작일	교과 종료일	상태	종합보고서
2019	1	학기제	국내현장실습(4)	12	대구대학교	2019-03-04 일	2019-06-23 일	통과	작성

3 실습지도교수

-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

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시스템에서 승인/미승인 처리

※ TIGERS+(교원) → 학사행정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교수 승인

※ 조회 클릭하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

※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

- 현장실습지도

가.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 우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

나.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출근 상황,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실습지도보고서' 작성(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

다.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

- 1) 메뉴 : TIGERS WEB+(교원시스템) 접속 - 학사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보고서
- 2) 지도기간 :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
- 3) 우측의 '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정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16주 / 640시간)		학기제 현장실습 (20주 / 800시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4-09-02(월)	2024-12-22(일)	2024-09-02(월)	2025-01-19(일)
2024-09-03(화)	2024-12-23(월)	2024-09-03(화)	2025-01-20(월)
2024-09-04(수)	2024-12-24(화)	2024-09-04(수)	2025-01-21(화)
2024-09-05(목)	2024-12-25(수)	2024-09-05(목)	2025-01-22(수)
2024-09-06(금)	2024-12-26(목)	2024-09-06(금)	2025-01-23(목)
2024-09-09(월)	2024-12-29(일)	2024-09-09(월)	2025-01-26(일)
2024-09-10(화)	2024-12-30(월)	2024-09-10(화)	2025-01-27(월)
2024-09-11(수)	2024-12-31(화)	2024-09-11(수)	2025-01-28(화)
2024-09-12(목)	2025-01-01(수)	2024-09-12(목)	2025-01-29(수)
2024-09-13(금)	2025-01-02(목)	2024-09-13(금)	2025-01-30(목)
2024-09-19(목)	2025-01-08(수)	2024-09-19(목)	2025-02-05(수)
2024-09-20(금)	2025-01-09(목)	2024-09-20(금)	2025-02-06(목)
2024-09-23(월)	2025-01-12(일)	2024-09-23(월)	2025-02-09(일)
2024-09-24(화)	2025-01-13(월)	2024-09-24(화)	2025-02-10(월)
2024-09-25(수)	2025-01-14(화)	2024-09-25(수)	2025-02-11(화)
2024-09-26(목)	2025-01-15(수)	2024-09-26(목)	2025-02-12(수)
2024-09-27(금)	2025-01-16(목)	2024-09-27(금)	2025-02-13(목)
2024-09-30(월)	2025-01-19(일)	2024-09-30(월)	2025-02-16(일)

※ 유의사항

- 학기제 국내현장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건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
단,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09. 04(월) ~ 2024. 12. 22(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 주말 및 법적공휴일은 실습 시작 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시간 ■ 1주 기준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일 / ■ 근로요일 : [직접기입] *월~금 등 요일 기입

★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원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날인/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과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실시 [] ■주기적/상시적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월/주 기준 중 선택]▶ [기준]/[]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시간 기준]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운영 / 지도 계획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00학과 1명, 000학과 1명 또는 000학과/000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붙임3]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학기제 전공선택 신청 학생용)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

소 속	대학	학과(전공)	학년(학기)	
성 명		학 번		
실습기관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6주() 20주()	
학점인정학기	학년도 학기	인정교과목	국내현장실습(일반선택) 3학점 전공현장실습(전공선택) ()학점	

실습내용	인정사유(의견)

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에 대한 전공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 전공주임교수 : (인)

소속교수(*실습지도교수 날인 필수)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소속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2/3 이상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학점 인정

※ 현장실습내용 증빙서류(기관운영계획서) 필수 첨부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

(복수전공,부전공 인정불가)

대 구 대 학 교 총 장 귀 하